

봄 날 방문 간 호 복 지 센 터

운 영 규 정 개 요

운영규정 개요

I.기본정보

기관명	봄날방문간호복지센터	대표자	김다혜
설치일자	2024.01.01	급여종류	(재가급여)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무원로 6번길 12 대흥프라자 710호		
전화	031-970-7663	팩스	031-971-7663
이용대상	만 65세 이상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 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II.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이용정원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 별도의 정원을 두지 않는다.
- 이용자 모집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기관 홈페이지(블로그등), 지역 신문,지인 소개, 대상자 방문상담,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SNS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35조, 개인정보보호법 준수하여 대면/비대면 모집

III.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용자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이용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부양욕구(장기요양서비스에 한함)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해당제도·계약내용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제공
급여계약	① 선택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체결 ※ 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 수급권자·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입소·이용 신청·승인 후 급여계약 진행 ② 급여계약서류 제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증명서(해당자) ③ 계약자 확인 사항 계약 기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대비 종류 및 내용과 비용, 급여대상(식사재료비, 상급침실비용, 이미용비 등) 및 항목별 비용,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 할 경우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체납 여부 등. ④ 계약서 2부 작성하여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각 1부씩 보관
계약기간	시설과 이용자 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이내로 한다. 이용자 본인 또는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한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에 이용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계약해지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계약급여종류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계약급여종류 서비스 제공시간을 ‘갑’(또는 ‘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의 장기요양보험인정이 등급외자로 등급변경 된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계약급여종류 서비스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③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신원 인수인권리	①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있음을 확인할 권리 ③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④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원 인수인의무	①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에 따라 알 권리가 있다. ②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이용자는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⑤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개인정보자료(의료기록 등)를 시설에 제공할 수 있다. ⑥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⑦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⑧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⑨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배상책임 보험	① 시설은 다음 각호의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배상책임이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 시설)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 시설)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상하거나 독극물로 변질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② 면책 범위에 대한 사항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시설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시설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

IV.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 참조	이 외 세부규정 준수는 봄날방문간호복지센터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	------------------------------------